

의안번호	2209955
의 퇴 인	김현정의원
회 답 일	2025.7.25.
추계번호	25D24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공여해제반환재산을 평택시가 활용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297억 200만원(연평균 324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0	78,699	21,531	20,480	120,709	30,17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2,786	2,285	1,917	2,005	8,993	2,248
합계	2,786	80,984	23,448	22,485	129,702	32,426

주: 평택시의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새로운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신설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유효기간)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의무규정
3	안 부칙 제2조(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으로 봄.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제1항제9호의2 (지역개발계획의 수립·확정) 신설	○	-
2	안 법률 제7271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유효기간)	○	-
3	안 부칙 제2조(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평택시의 새로운 지역개발계획 관련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개발사업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환한 국·공유지의 매각 시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축소되고 추가 사업을 추진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인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평택시의 지역개발사업에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공시지가 인상률 및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될 경우, 평택시지역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주한미군시설사업 등 사업이 계속 추진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평택시 지역개발사업(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포함)은 연차별 개발계획(제15조) 및 사업비의 지원(제19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제2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제29조), 지방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제29조의2),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제32조),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제

33조), 지방교부세 지원의 특례(제34조) 등 사업 대다수가 현행법 제14조에 근거한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임

- 평택시 지역개발사업은 전체 86개 사업에 18조 9,7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특별지원사업 15개,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 2개, 일반사업 69개 등 총 86개의 사업이 추진 중임

[표 2] 평택시 지역개발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 건수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공공	민자
합 계		86	189,796	44,943	3,052	4,889	101,017	35,895
특별 지원	소 계	15	14,871	7,636	1,056	566	187	5,426
	행안부	11	7,012	5,658	828	339	187	
	문체부	2	7,256	1,528	151	151		5,426
	환경부	1	203	50	77	76		
	국토부	1	400	400				
특별회계	국방부	2	11,638	11,206				432
일반지원	11개 기관	69	163,287	26,101	1,996	4,323	100,830	30,037

자료: 평택시

- 주한미군시설사업은 크게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부지매각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2025년 6월 기준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 주한미군시설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현황

구 분		건설사업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부지매각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추진계획		72개 프로젝트	이전 위치, 규모, 범위 한미 협의 중	36개 기지	47개 기지
추진 현황	완료	71개 프로젝트		22개 기지	20개 기지
	진행	1개 프로젝트		7개 기지	20개 기지
진 도		98.6%		61.1%	42.6%
완료시기		2028년 완료 예정	완료시기 미확정	2029년 완료 예정	반환기지 40개 2031년 완료 예정

주: 미반환 7개 기지에 대한 환경정화 및 매각은 반환이 완료되면 적기 시행 예정

자료: 국방부

- 다만, 현행법 부칙<제7271호, 2004.12.31.> 제3항 및 제4항¹⁾은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해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 화계획지구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 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되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현행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법률 효력이 종료될 경우, 동 법 제 8조의2 규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으로 칭함)의 존속 근거가 소멸하게 되나, 개정안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될 경우, 사업단의 존속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 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사업단의 존속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방부가 제출한 사업단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산정함
 - 인건비 단가는 2025년 예산 기준 단가에 최근 3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
-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7271호, 2004.12.31> ①·② (생략)

③ (유효기간 만료후의 적용특례) 이 법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평택시개발사업, 국제 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외국교육기관 및 이에 대한 지원은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주한미군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인 주한미군시설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안 제14조제1항제9의2호)

- 평택시는 공여해제반환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CPX훈련장에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

[표 4] 주한미군 반환용지(CPX훈련장) 역사공원 조성계획

구분	주요내용
사업기간	2020. 2. ~ 2031. 1.
위치	CPX 훈련장(팽성읍 남산리 산49-1)
사업내용 및 규모	공원 조성 200,618㎡, 역사박물관 건립(1동) 1,370평 토지매입 200,618㎡(반환공여지 128,220㎡, 사유지 72,398㎡)
사업비	927억원(2021년 기준)

자료: 평택시

- 평택시가 제출한 주한미군 반환용지(CPX훈련장) 역사공원 조성계획 사업비 산출내역을 기초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정

[표 5] 주한미군 반환용지(CPX훈련장) 역사공원 조성계획 사업비 산출내역(2021년 기준)

구분	산출내역	소요액(천원)	비고
계		92,728,260	
공사비	▶ 기존 건축물 수리 공사비 - 427평*6,000천원 = 2,562,000천원 ▶ 신축 건축물 건축 공사비 - 1,373평*10,000천원 = 13,730,000천원 공사비 단가 용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구상용역	16,292,000	- 수리 공사비 6,000천원/평 - 신축 공사비 10,000천원/평
토지매입비(추정)	▶ 토지매입비 약 65,964,000천원 - 국·군유지 40필지 약 128,220㎡ - 사유지 33필지 약 72,398㎡ - 공시지가 2021년 1월 기준 - 토지 매입비 = 공시지가 × 1.5배	65,964,000	
공원조성비	▶ 공원조성 10,472,259천원 - 계획부지 200,618㎡×0.6×87,000원 * 0.6 = (전체 공원면적 - 식생 활용면적) / (전체 공원 면적) 공사비 단가 용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구상용역	10,472,26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43호에 따라, 공원 조성 비용은 1㎡당 87,000원으로 산정

주: 평택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구상용역”를 기초로 산정한 내역임

자료: 평택시

- 추계에서는 평택시가 제출한 주한미군 반환용지(CPX훈련장) 역사공원 조

성계획 사업비 산출내역을 기초로 산정함

- 평택시는 “주한미군 반환공역구역 활용방안 구상용역”을 실시하여, 2021년 기준 주한미군 반환용지(CPX훈련장) 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제출
- 공사비는 최근 5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 증가율 5.7%를 적용하고, 토지매입비는 평택시의 개별공시지가 인상률을, 공원조성비는 2025년 국토교통부 고시²⁾에 따른 공원조성비용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 설계비는 총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설계 대가요율³⁾⁴⁾에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곱하여 산출
- 감리비는 건축공사비에 국토교통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산출된 건축감리 대가요율⁵⁾에 직선보간법을 적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
- 시설부대비는 건축공사비에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⁶⁾에 직선보간법을 적용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98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30억원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원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자료: 국토교통부

4) 종별 구분을 2종(보통), 설계도서량 구분은 중급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설계비 요율은 기존건축물의 경우 4.406%, 신축건축물의 경우 4.090%임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감리 대가요율에 따르면, 공사비 300억원, 500억원 및 1,000억원의 대가요율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자료: 국토교통부

6) 공사비 기준 20억원 이상 30억원까지 0.36, 50억원까지 0.27, 100억원까지 0.25, 1,000억원까지 0.23%임

- 평택시의 계획을 고려하여, 2028년 토지를 매입하고 2029~2030년 2개년에 걸쳐 건축물 및 공원조성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주한미군 반환용지(CPX훈련장) 역사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합계
건축물 공사	공사비	0	12,692	12,692	25,385
	설계비	0	1,051	0	1,051
	감리비	0	129	129	259
	시설부대비	0	31	31	62
공원조성비		0	7,627	7,627	15,254
토지매입비		78,699	0	0	78,699
합계		78,699	21,531	20,480	120,7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존속기간 연장

- 2006년 7월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함)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202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 법의 유효기한이 2030년까지 연장되고, 평택기지 이전사업,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부지매각을 위한 환경정화사업, 부지매각 등 계획된 사업의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해 사업단이 존속할 경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 최근 4년간의 사업단 운영에 소요된 경비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요경비 내역

구분			2022	2023	2024	2025
인건비 등	인건비 월단가(천원)	전문임기제	5,696	5,552	7,757	8,386
		기간제	2,769	3,204	3,704	4,286
	대상인원(명)	전문임기제	20	16	12	11
		기간제	9	9	8	7
	인건비 (백만원)	전문임기제	1,367	1,066	1,117	1,107
		기간제	299	346	356	360
		합계	1,666	1,412	1,473	1,467
	복리후생비(백만원)		1	3	2	4
	기관부담금(백만원)		145	147	128	124
	소계(백만원)		1,812	1,562	1,603	1,594
경상경비(백만원)		1,355	819	674	717	
합계(백만원)		3,167	2,381	2,277	2,311	

자료: 국방부

□ 국방부가 제출한 사업단의 계획에 따라, 추계기간에 전문임기제 9명과 기간제 7명의 인건비를 산정

- 인건비는 2025년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 평균 공무원임금상승률 2.4%를 적용하여 산정함
- 기관부담요율은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 요율⁷⁾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국방부 계획을 반영함

[표 8]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인건비 등 추정: 2027~2030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인건비 월단가(천원)	전문임기제	8,793	9,004	9,221	9,442	－
		기간제	4,494	4,602	4,713	4,826	－
	대상인원(명)	전문임기제	9	9	9	9	－
		기간제	7	7	7	7	－
	인건비 (백만원)	전문임기제	950	972	996	1,020	3,938
		기간제	378	387	396	405	1,565
		합계	1,327	1,359	1,392	1,425	5,503
복리후생비(백만원)			4	4	4	4	14
기관부담금(백만원)			174	179	185	191	729
인건비 등 합계(백만원)			1,505	1,542	1,580	1,619	6,2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경상경비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부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용역비를 포함하였음

[표 9]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경상경비 등 추정: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401	343	327	376	1,447
감정평가용역비	880	400	10	10	1,300
합계	1,281	743	337	386	2,7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개정안에 따라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할 경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인건비, 기본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89억 9,300만원(연평균 22억 4,800만원)으로 추계됨

7)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 요율(%)	13.130	13.194	13.286	13.380

[표 10]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등	1,505	1,542	1,580	1,619	6,246	1,562
경상경비 등	1,281	743	337	386	2,747	687
합계	2,786	2,285	1,917	2,005	8,993	2,2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공여해제반환재산을 평택시가 활용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297억 200만원(연평균 324억 2,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주한미군 반환용지 역사공원 조성	0	78,699	21,531	20,480	120,709	30,177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 연장	2,786	2,285	1,917	2,005	8,993	2,248
합계	2,786	80,984	23,448	22,485	129,702	32,426

주: 평택시의 구체적인 계획 미비로 새로운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평택시가 제출한 주한미군 반환용지의 역사공원 조성계획 및 국방부가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